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가합309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상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에 각 기재된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7나2045224호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원인으로 한,

나.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에 기재된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32965호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등기명의를 이전

원고는 1990. 6. 12. [별지] 부동산 목록에 각 기재된 부동산(이하 위 목록의 제1항, 제2항에 각 기재된 부동산을 ‘이 사건 1부동산’, 같은 목록의 제3항에 기재된 부동산을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1113호로 1981. 12. 2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판결 확정

망 C는 2016년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1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이 계속되던 중 망 C가 사망하여 피고가 소송을 수계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9. 위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6가합31763호).

위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8. 7. 18. 망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1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나2045224호).

위 판결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8. 11. 8. 자 2018다261469 심리불속행판결로 상고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상고인인 원고에게 2018. 11. 13. 송달됨으로써 같은 날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1차 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판결 확정

피고는 2019년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2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7. 23.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9가합32965호), 위 판결은 2020. 8. 15. 확정되었다(이하 '2차 판결'이라 하고, 1차 판결과 위 판결을 통틀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3조 제1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관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4항).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관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관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가 1990.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자신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원고에게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도록 할 수 있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의무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편상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고, 가족 간의 재산 및 금전 다툼으로 인한 소송의 결과이므로 상호 관련된 재산상의 문제들을 포함하여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변론기일에 원고 측은 조정절차를 희망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서 조속한 판결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1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1차 판결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2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2차 판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송효섭, 판사 임현수

[별지]

부동산 목록

1. 서울 용산구 D 대 859.5㎡
2. 서울 용산구 E 대 62.8㎡
3. 서울 용산구 F 대 2248.9㎡

